

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이우천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17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
2.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0년 11월 23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13,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haidi022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(안)

(이우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0. 11. .

발 의 자 : 이우천, 성복임, 장경민,
이견행, 홍경호, 신금자,
이길호, 김귀근

1. 제안이유

- 군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알권리 확대를 통한 열린 의정구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조~2조)
- 모니터단의 역할 및 구성등에 대한 사항 규정(안 제3~4조)
- 모니터단의 회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조)
- 의견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- 모니터단의 해촉 및 활동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7~8조)
- 모니터단 개인정보의 보호 및 신분증에 관한 규정(안 제9~10조)
- 포상에 관한 규정(안 제11조)

3. 관련법규

- 관계법령 :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

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포시의회에 의정모니터단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(이하 “모니터단”라 한다)이라 함은 군포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, 시민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시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역할)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의회 및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
2.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·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건의
3. 의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및 시민 불편사항 건의
4. 의정활동 모니터
5.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

제4조(구성 등) ① 모니터단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활동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② 모니터단 단원(이하 “단원”이라 한다)의 모집정수는 20명 이내로

한다. 단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%를 넘지 않도록 한다.

③ 단원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.

④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시 공개추첨하며 공개추첨은 신청자 중 추첨자를 선정하여 추첨한다.

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① 모니터단은 정기회의, 간담회를 개최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상·하반기 연 2회를 개최하고, 간담회는 격월로 연 6회를 개최한다.

제6조(의견의 접수 및 처리) ①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모니터단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단원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우편·전화·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단원은 본회의 방청 등 모니터 활동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다.

④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,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군포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군포시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.

제7조(해촉) ① 의회 의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
2. 다른 시·군 등으로 전출 시
3. 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
4. 6개월 이상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하지 않은 때
5. 그 밖에 모니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단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단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,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모니터단 활동지원) ①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,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단원이 정기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위원회 수당에 준하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개인정보의 보호) 제6조에 의한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0조(모니터단 신분증) ① 단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회 의장이 별지 제4호와 같이 신분증을 발급한다.

②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.

③ 신분증을 분실·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

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포상) 의장은 모니터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단원에 대해서는 「군포시의회 포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2조(위임규정) 이 조례 이외의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의정모니터단 제안서

성명		연락처	
의견분류	☐ 입법동향조사 ☐ 정책건의 ☐ 우수사례소개 ☐ 시민불편해소		
제 목			
지역현황			
개선건의			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의정모니터단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

[illegible]

방청 보고서

일 시	년 월 일	기록자	
방청 내용	○ 시정질문	회의 구분	○ 본회의 ○ ()특별위원회
	○ 행정사무감사		
	○ 예산 및 결산심의		
	○ 일반안건		
	○ 기타 ()		
의원 출결상황			특이사항
	○ 의장 ○ 부의장 ○ --- 의원, --- 의원, --- 의원, --- 의원, --- 의원, --- 의원, --- 의원		
모니터 소감 및 의견			

안전 및 방청 내용 (구체적인 내용 작성)

방청 활동시 체크해야 할 사항 ☐ 출석여부(이석상황(회의방해)등) 체크 ☐ 발언 및 요지 ☐ 공무원 답변 및 요지 ☐ 제안된 안전에 대한 의사결정사항(찬,반) ☐ 기타(의정활동과 관련한 품위손상, 물의, 회의방해/ 사익, 비공익적 발언 사항)

【별지 제4호 서식】

의정모니터단증

전 면

의정모니터단증

홍길동
군포시의회

후 면

발급번호
성명 :
생년월일 :
이 사람은 군포시의회 의정 모니터단임을 증명함.
년 월 일
군포시의회 의장(직인)

1. 사진규격 : 3×4.5cm
3. 신분증 크기는 5.4cm × 8.5cm로 한다.

【별지 제5호 서식】

의정모니터단 신분증 발급대장

[illegible]

【별지 제6호 서식】

의정모니터단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

- 성 명 :
- 주 소 :
- 생 년 월 일 :
- 재발급 사유 :

「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에 따라
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※ 첨 부 - 사진(반명함) 1매

 년 월 일

신청인 주 소 :
 성 명 :

군포시의회의장 귀하